

● 제29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6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6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70)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72)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76)**

검 토 보 고 서

2020.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667, 1669, 1670, 1672, 1676

I. 조례안 개요

1. 발의자 및 제안경과

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67)

- (1)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외 42명
- (2) 발 의 일 : 2020. 7. 13.
- (3) 회 부 일 : 2020. 7. 14.

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69)

- (1)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외 42명
- (2) 발 의 일 : 2020. 7. 13.
- (3) 회 부 일 : 2020. 7. 14.

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70)

- (1)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외 42명
- (2) 발 의 일 : 2020. 7. 13.

(3) 회 부 일 : 2020. 7. 14.

**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의안번호 1672)**

(1)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외 42명

(2) 발 의 일 : 2020. 7. 13.

(3) 회 부 일 : 2020. 7. 14.

**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안번호 1676)**

(1)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외 42명

(2) 발 의 일 : 2020. 7. 13.

(3) 회 부 일 : 2020. 7. 14.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안번호 1667)**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
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69)**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70)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72)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76)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67)

-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함(안 제2조 등).

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69)

-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함(안 제2조 등).

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70)

-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함(안 제2조 등).

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72)

- 입장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 이용자의 사용 및 금지의 제한규정을 변경함(안 제7조).

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76)

- ‘주부’를 ‘여성’으로 함(안 제2조제3호).

4. 참고사항

**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5)**

- (1) 관계법령: 해당 없음.
- (2)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3)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참조)

**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안번호 1667)**

- (1) 관계법령: 해당 없음.
- (2)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3)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참조)

**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69)**

- (1) 관계법령: 해당 없음.
- (2)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3)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참조)

**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의안번호 1670)**

- (1) 관계법령: 해당 없음.
- (2)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3)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참조)

**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의안번호 1672)**

- (1) 관계법령: 해당 없음.
- (2)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3)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참조)

**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안번호 1676)**

- (1) 관계법령: 해당 없음.
- (2)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3)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의안번호 1667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669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0번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2번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6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2020년 4월 2일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및 증진, 인권침해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임.

〈 인권위 권고를 반영한 개정안의 개요 〉

인권영향평가			개정조례안
평가항목	현재용어	대안용어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저출산	저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67)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69)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70)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	주부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76)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72)

□ 차별적 용어 개선 : 저출산 → 저출생

- 의안번호 1667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669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0번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상의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성인지적 관점의 대안용어인 ‘저출생’으로 바꾸려는 내용임.
- 이는 2018년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연구를 통해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을 발간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신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인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바,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대안용어인 ‘저출생’을 사용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자녀 수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것처럼 “출산”과 “출생”이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일방적인 용어 변경을 하기 보다는 조문의 맥락이나 용어의 개념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동 조례안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 없이 용어를 변경하는 것 역시 법체계 상의 불일치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편견등을 근거로 대상 한정 용어 개선

- 의안번호 1676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주부인턴쉽 프로그램”을 “여성인턴쉽 프로그램”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부인턴쉽 프로그램”이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응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직장체험 활동을 말한다.	3. 여성 -----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현행 “주부인턴쉽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은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주부로 특정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라 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용어라 할 수 있음.
- 또한 실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의 명칭

이 여성가족부의 “새일여성인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업 명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여성가족부의 국비 매칭사업(매칭 비율 : 국비 80%, 지방비 20%)의 명칭을 구지 서울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개정안 외의 현행 조례 제6조제5호에도 “주부인턴쉽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정 처리가 요망된다 할 것임.
- 현행 조례 제6조제6호 역시 2020년 7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에서 “일·생활 균형”으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음.

현 행	수정 제안안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생 략)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u>주부인턴쉽 프로그램 운영</u>	5. <u>여성</u> -----
6. <u>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u> 와 환경조성	6. <u>일·생활 균형</u>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 개선

- 의안번호 1672번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시립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인 상상나라 이용에 따른

입장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 취소에 따른 시민의 권리인 반환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현행	개정안
<p>제5조(연회비 및 입장료등의 징수)</p> <p>① 서울상상나라의 체험전시물, 프로그램 및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u>자</u>는 입장료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u><신설></u></p>	<p>제5조(연회비 및 입장료등의 징수)</p> <p>① ----- <u>사람은</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u></p>

-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서울상상나라의 관람 제한 대상을 실제 관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나 상태에 따라 피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주취자 등으로 특정하여 명시하던 것을 “타인에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p>제7조(사용의 금지 및 제한) ① (생략)</p> <p>1. <u>술에 취한 자</u></p>	<p>제7조(사용의 금지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1. <u>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u></p>

<p>2. <u>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자</u></p> <p>3. 반려동물을 동반한 <u>자</u></p> <p>4. 그 밖에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자</u></p>	<p><삭 제></p> <p>3. ----- <u>사람</u></p> <p>4. ----- ----- ----- ----- <u>사람</u></p>
--	--

- 다만 개정안(안 제7조제1항제1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역시 실제 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제한의 모호성이 남아있는 바, 이를 제외하고 “관람이 지장을 주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한편, 개정안 외의 현행 조례 제2조, 제6조, 제8조에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해야 할 조문이 남아있는 바, 이에 대한 변경 역시 필요하다 할 것임.

현 행	수정 제안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사용자”란 서울상상나라 체험관 및 공연장 등의 시설을</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p>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1. ~ 5의2. (생략)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7.·8. (생략)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
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서울
상상나라 입장료를 납부하는 자
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
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
관을 요구할 수 있다.

----- 사람을 -----.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

--- 사람-----

1. ~ 5의2. (현행과 같음)

6. ----- 사
람 중 -----

7.·8. (현행과 같음)

② -----

----- 사

람 에 -----

-----.

제8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사람-----

-----.

3 종합 의견

- 동 검토보고의 대상이 되는 5건의 개정조례안은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조례안 외의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개정안의 변경사항 역시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바, 일부 조문의 수정 처리가 요망된다 할 것임.